

울 산 지 방 법 원

판 결

사 건 2013가단14582 손해배상(자)

원 고 1. A
2. B
3. C
4. D

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성운

피 고 E연합회

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병수

변 론 종 결 2013. 10. 11.

판 결 선 고 2013. 11. 29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 A에게 2,350,000원, 원고 B, C에게 각 1,000,000원, 원고 D에게 137,502,865원 및 각 이에 대한 2013. 3. 13.부터 2013. 11. 29.까지 연 5%,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2.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.
3. 소송비용 중 1/5은 원고들이,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.
4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청 구 취 지

피고는 원고 A에게 550만 원, 원고 B, C에게 각 300만 원, 원고 D에게 170,080,760원 및 이에 대한 2013. 3. 13.부터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%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이 유

1. 인정사실

가. 피고와 공제계약을 체결한 00-0000 개인택시의 운전자는 2013. 3. 13. 04:1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울산 북구 양정동 양정힐스테이트 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양정 파출소 방면에서 효문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, 위 도로 2차로 횡단 보도 위에 망 F이 술에 취하여 쓰러져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하여 망인을 역과하였다.

나. 위 사고로 망인은 2013. 3. 13. 05:50경 사망하였다.

다. 사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, 사고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60km인데 위 택시는 시속 약 50km 내지 57km로 주행 중이었다.

라. 원고 A, B는 망인의 조부모, 원고 C은 망인의 여동생, 원고 D은 망인의 모친이다.

마. 위 택시 운전자는 위 사고로 인한 형사재판 과정에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 D에게 1,000만 원을 공탁하였고, 추가로 1,0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2, 3호증, 을 제1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그 제한

가. 책임의 발생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망인은 위 택시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한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판단되므로, 피고는 그로 인하여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.

나. 책임의 제한

피고는 망인이 자살을 시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제기하나, 을 제1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.

다만, 망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횡단보도상에 쓰러져 있다가 사고를 당했고 비가 내리는 야간에 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, 피고의 책임을 45%로 제한한다.

3. 손해배상책임의 범위

특별히 실시하지 아니한 당사자의 주장은 이를 배척한다.

가. 망인의 일실수입(월 5/12%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단리로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현가계산하고,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, 원 미만은 버림, 이하 같음)

(1) 인적사항

(2) 소득 및 가동기간

- 소득 : 피고가 다투지 아니하므로 2013. 1. 1.부터 적용되는 도시보통인부의 일용노임인 1일 81,443원을 기초로 한다.

- 가동기간 : 원고가 성년(만 19세)이 되어 21개월의 군복무(육군 사병기준)를 마치는 다음날인 2017. 9. 12.부터 만 60세가 되는 2056. 12. 11.까지로 본다.

(3) 생계비 : 1/3 공제

(4) 계산결과 : 274,450,812원

	기간 초일	기간 말일	노임단가	일수	월소득	생계비	m1	호프만1	m2	호프만2	m1-2	적용호프만	기간일실수입
1	2017-9-12	2056-12-11	81,443	22	1,791,746	1/3	524	277,5603	53	47,7977	471	229,7626	274,450,812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4호증의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나. 장례비 : 300만 원을 원고 A이 지출.

[인정근거] 변론 전체의 취지, 경험칙

다. 과실상계 및 그 결과 : 망인의 과실 55%

(1) 망인의 일실수입 : 123,502,865원(274,450,812원 × 45%)

(2) 장례비 : 1,350,000원(300만 원 × 45%)

라. 위자료 : 망인 3,000만 원, 원고 A, B, C 각 100만 원, 원고 D 400만 원(사고의 경위, 그 결과, 망인의 가족관계 및 원고들과의 관계 등 제반 사정 참작)

마. 상속관계 : 망인의 일실수입 및 위자료 합계 153,502,865원을 원고 D이 단독상속함.

바. 공제 : 불법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수사 및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거나 가해자가 금원을 공탁한 경우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(대법원 1999. 1. 15. 선고 98다 43922 판결 참조), 위 택시 운전자가 지급한 형사합의금 및 공탁금 2,000만 원을 원고 D의 몫에서 공제한다.

[인정근거] 갑 제2호증의 기재, 변론 전체의 취지

3. 결론

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235만 원(위자료 100만 원 + 장례비 135만 원), 원고 B, C에게 각 100만 원, 원고 D에게 137,502,865원(망인의 일실수입 및 위자료 합계

153,502,865원 + 위자료 400만 원 - 형사합의금 및 공탁금 2,000만 원) 및 각 이에 대한 사고일인 2013. 3. 13.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3. 11. 29.까지 민법이 정한 연 5%,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%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,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,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.

판사 남기용